



수 신 회 원 사

참 조

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

1. 귀 회원의 건승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2.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, 더민주, 국토교통위원회, 의안번호 2221815('26.10. 6) / 이용선, 더민주, 국토교통위원회, 의안번호 2221805('26.10. 6))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. 10. 16(금)까지 우리사회로 제출(팩스 052-256-8904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주요내용

- [김남근 의원 대표발의]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시 발주자 서면 승낙 의무화 (안 제29조제2항)
- [이용선 의원 대표발의]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·하도급대금의 지급 기한 단축(15일→7일) (안 제34조제1항·제4항)

- 붙임 1.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각 1부.
2. 의견 제출양식 1부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
회 장 조 현



담당자 주임 박성민 부장 이무열 사무처장 정은숙

시 행 전건협 울산 제580호 (2026. 10. 12)

우 44726 울산 남구 삼산로 156 (달동, 전문건설회관 4층) / <http://www.kosca26.or.kr>

전화 052-256-8900 전송 052-256-8904 / 전자우편 acemy72@kosca.or.kr